

## 부속서 I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7.6조(비합치 조치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12조(비합치 조치 – 투자)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의 기준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7.2조(내국민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3조(내국민 대우 – 투자)
  - 나. 제7.3조(최혜국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1.4조(최혜국 대우 – 투자)
  - 다. 제7.4조(시장접근 –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라. 제7.5조(현지주재 –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마. 제11.9조(이행요건 – 투자), 또는
  - 바. 제11.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투자)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관련의무**는 제7.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12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 투자)에 따라, 열거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 다.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라. 한국의 경우,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호주의 경우, **조치 근거**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조치** 또는 **조치 근거**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 마. **유보내용**은, 한국의 경우,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그리고 **유보내용**은, 호주의 경우,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3. 제7.6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12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 – 투자)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

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호주의 경우에는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명시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현지주재와 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거주요건과 같은) 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7.2조(내국민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7.3조(최혜국 대우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7.5조(현지주재 -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내국민 대우 - 투자), 제11.4조(최혜국 대우 - 투자) 또는 제11.9조(이행요건 - 투자)에 대한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한국의 경우, “외국인” 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